

#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 확보와 산업재해 예방, 두 마리 토끼를 잡다

-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설명회 열려

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진종욱, 이하 국표원)은 3월 5일(화) 공인 시험인증기관(KOLAS 기관)을 대상으로 “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\*(이하 신고조사제도) 설명회”를 개최하였다.

\* 신고조사제도는 「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따라 부정, 위·변조, 오류 성적서 등을 신고접수하여 조사하는 제도로,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조사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신고조사센터 운영 중(www.tacci.kr/1833-5577)

이날 설명회는 신고조사제도 소개, 시험인증 부정행위 조사 절차 및 사례 발표 등을 통해 성적서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신고조사제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\* [붙임1] 「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」 설명회 참고

특히, 이번 설명회는 「중대재해처벌법」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( '24.1.27)됨에 따라 「중대재해처벌법」에 대한 내용도 함께 소개하여 시험인증기관이 스스로 사업장 내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시험인증 서비스의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하였다.

진종욱 국표원장은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가 활성화되면 부정성적서의 유통 차단 효과로 시험인증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시험인증기관과 상시 소통하고 이해를 돕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적합성정책국 시험인증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형민 (043-870-5480)
		담당자	연구관	노학엽 (043-870-5487)
			주무관	이유진 (043-870-5359)

□ **배경 및 목적**

- 시험인증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신고제도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한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와 「중대재해처벌법」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 개최

□ **설명회 개요**

- (일 시) 2024. 3. 5.(화) 14:00~16:10
- (장 소) 양재 aT센터 3층 세계로룸
  - \* 주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, aT센터 3층
- (참석자) 공인 시험인증기관 등
- (주요내용)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및 「중대재해처벌법」 소개
- (세부일정)

시간	내 용	비고
13:30~14:00	▪ 참석자 접수	
<b>개회 및 설명회 발표</b>		
14:00~14:20 (20분)	▪ 국내외 시험인증산업 현황 및 산업 전망	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
14:20~14:50 (30분)	▪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및 조사 센터 소개	한국제품안전관리원
14:50~15:10 (20분)	▪ 부정성적서 조사현황 및 사례	
15:10~15:40 (30분)	▪ 중대재해처벌법 개요	노무법인 비전
15:40~16:10 (30분)	▪ 질의응답	

□ **배경 및 목적**

- 시험인증산업의 신뢰성 제고와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「적합성 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(약칭: 적합성평가관리법) 시행(‘21.4.8.)
  - 시험인증 부정행위 조사를 통해 부정성적서의 발행·유통·사용을 차단

□ **주요 내용**

- (시험인증 부정행위) 법 제5조제3항·제4항·제5항을 위반하는 행위

구분	내용	벌칙
제5조제3항 위반	- 평가결과를 고의로 조작하여 성적서를 발급 -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성적서를 발급 -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·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	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제5조제4항 위반	- 시험 항목의 누락 - 시험 항목의 오적용 - 측정 기준의 오적용	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
제5조제5항 위반	- 성적서를 위조·변조 - 부정성적서임을 알고도 이를 활용	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- (부정행위조사기관)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를 개소(‘21.5.18.)
  -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는 시험인증 부정행위를 조사하고, 조사결과에 따라 형사고발 및 과태료 부과 요청 등 후속조치를 실시
- (신고방법) 국민신문고 및 홈페이지, 유선 등을 통해 민원 신고
  - \*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홈페이지 이용 시 간편하게 신고 가능

<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신고창구>

- ◆ (홈페이지) [www.tacci.kr](http://www.tacci.kr)(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고창구 이용 가능)
- ◆ (전화번호) 1833-5577(전국 대표번호)
- ◆ (이메일) [tacci@kips.kr](mailto:tacci@kips.kr)